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결 정 문

사건번호 : KR-1500105

신 청 인 : 주식회사 한화(Hanwha Grop)

대리인 : 법무법인 세종

피신청인 : 윤현준(Yun Hyun Jun)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 주식회사 한화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대리인 :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임보경, 송봉주)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8층

피신청인: 윤현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분쟁 도메인이름은 “hanwhatechwin.com, hanwhathales.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메가존(서울 강남구 역삼동 735-22 GALA 빌딩 7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5. 2. 2.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5. 2. 3.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5. 2. 4.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5. 2. 4.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 이라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5. 2. 6.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5. 2. 26.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5. 2. 26.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5. 3. 2.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후보를 고려하여 이덕재 위원을 주조정인으로 남호현, 서정일 위원을 부조정인으로 선임요청 하였고, 같은 날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5. 3. 6.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한국 10대 기업그룹집단인 한화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한국법인이고, 신청인을 포함한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Hanwha”, “한화” 또는 이들을 포함한 다수의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최근 삼성그룹과 삼성그룹 방산 관련 계열사인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와 “삼성탈레스 주식회사” 등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인수합의사실은 2014. 11. 25. 자정을 전후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2014. 11. 26.자에 등록하였는데 그 주소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검색결과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나타난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한화그룹의 지주회사격이고 신청인과 한화그룹의 계열사들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Hanwha”는 널리 알려져 있는 저명상표이다. 2) “techwin”과 “thales”는 최근 한화그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합의한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와 “삼성탈레스 주식회사”의 각 상호에서 “삼성”을 제외한 “테크윈”과 “탈레스”의 영문표기이다. 3) 신청인 또는 한화그룹계열사가 위 회사 인수절차 종료 후에 사용할 상호의 핵심요부는 각각 “한화탈레스”와 “한화테크윈”, 그 영문표기는 각각 “Hanwhatechwin”과 “Hanwhathales”일 가능성이 높다. 4) 위 인수합의사실은 2014. 11. 25. 자정을 전후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5) 피신청인은 위 언론보도직후인 2014. 11. 26.에 분쟁 도메이름을 등록한 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 6) 위 기업 인수절차가 완료되면 분쟁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 사용주체는 한화그룹의 계열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 7) 설령 위 기업인수가 없더라도 분쟁 도메인이름에 저명한 상표 “Hanwh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화그룹의 계열회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B. 피신청인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지주회사격으로 있는 한화그룹의 계열사들이 상표등록하여 보유하고 있고 저명성이 인정되는 상표 “Hanwha” 또는 “한화”와 분쟁도메인이름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소비자들은 “hanwhatechwin”과 “hanwhathales”가 저명상표 “hanwha”에

“techwin” 과 “thales” 를 각각 결합한 것으로서, 그 웹사이트 운영주체를 신청인과 관련이 있는 회사 또는 한화그룹의 계열회사로 인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쟁도메인이름은 그 등록 직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신청인과 한화그룹 계열사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합의한 “삼성테크윈 주식회사” 및 “삼성탈레스 주식회사” 인수 절차 완료 후 그 인수회사가 사용하게 될 것으로 강하게 예상되는 상호의 영문표기 “Hanwhatechwin” 및 “Hanwhathales” 와 거의 동일하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달리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hanwha” 는 신청인과 한화그룹의 계열사들이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저명상표이다. 그리고 “hanwhatechwin” 과 “hanwhathales” 는 신청인과 한화그룹 계열사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합의한 “삼성테크윈 주식회사” 및 “삼성탈레스 주식회사” 인수 절차 완료 후 그 인수회사가 사용하게 될 것으로 강하게 예상되는 상호의 영문표기이다. 그런데 위 상표 “hanwha” 와 유사하고, 위 인수절차 완료 후 인수회사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호의 영문표기와 동일한 분쟁 도메인이름들을 피신청인이 우연히 등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피신청인이 위 기업인수에 관한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에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점,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후 지금까지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D. 신청에 대한 구제 형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주위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예비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인과 신청인이 지주회사격으로 있는 한화그룹이 아직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와 “삼성탈레스 주식회사”에 대한 인수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위 인수절차가 완료될 경우 인수한 회사에게 “techwin” 및 “thales”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것 외에 달리 현재시점에서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techwin”과 “thales” 부분에까지 정당한 권리가 없는 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hanwhatechwin.com> 및 <hanwhathales.com>을 말소 할 것을 결정한다.

	주조정인 이덕재	
부조정인 남호현		부조정인 서정일

결정일: 2015년 3월 31일